3. 한국거래소 규정
가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(허위공시에 대한 불성실공시 제재 강화 등)
나.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(공시위반제재금 상향 조정 등)
다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FICC파생시장 개장 조기화 및 코스닥150위클리옵션 상장)
라. 시장감시규정 (시장감시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 신설)
마.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(원화 OIS 거래 중앙청산 도입 및 청산 · 결제제도 개선 등)
바.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(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의 증거금률 조정)
사. 증권 ·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(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위임사항 제정)
아. 금리 · 통화 · 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(시장조성 의무발생시간 기준 조정)
자. 주식 ·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(코스닥150위클리옵션 시장조성 의무종목 추가)

3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(2025/10/20 개정 · 2025/10/22 시행)[1)]

1) 개정 이유

□ '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(2025.7.9, 금융위 보도자료)'에 따라 허위공시에 대한 불성실공시 제재를 강화하고, 상장규정상 매출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규정상 매매거래정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부과벌점 산정시 벌점 감경사유 적용 배제(제13조 제5항)

— 허위공시에 대해 벌점 감경사유 적용 배제 근거 신설

□ 공시위반제재금 상향 조정(제13조의3 제2항 제1호)

— 허위공시를 한 경우 부과벌점에 관계없이 제재금 부과 최고 수준인 벌점당 2,000만원 부과

□ 공시위반제재금 부과금액 감경사유 적용 배제(제13조의3 제3항)

— 허위공시를 한 경우 공시위반제재금 부과금액 감경사유 적용 배제 근거 신설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1)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

□ 매매거래 정지 제외 근거 마련(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)

— 매출액 미달과 관련하여 주요경영사항공시 또는 풍문 · 보도 등으로 공시규정상 매매거래정지시, 상장규정상 매출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공시규정상 매매거래정지 대상에서도 제외

- 주요경영사항공시 : 내부결산 결과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
- 관리종목 지정 예외 요건 : 최근 사업연도 보통주권 평균 상장시가총액이 1,000억원 이상인 경우 등

나.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(2025/10/20 개정 · 2025/10/22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'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(2025.7.9, 금융위 보도자료)'에 따라 허위공시에 대한 불성실공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부과벌점 산정시 벌점 감경사유 적용 배제(별표 1 제3호)

— 허위공시에 대해 벌점 감경사유 적용 배제 근거 신설

□ 공시위반제재금 상향 조정 및 대체부과 미적용(별표 1 제5호)

— 허위공시를 한 경우 부과벌점에 관계 없이 제재금 부과 최고 수준인 벌점당 1,000만원으로 부과하고 대체부과를 미적용

다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5/10/1 개정 · 2025/10/27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FICC파생시장의 개장시각을 조기화하고, 코스닥150위클리옵션, 신규 섹터지수 · ETF선물 등 신상품 상장을 추진하며, ETF선물거래에 대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를 확대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FICC파생시장 개장 조기화(별표 1의2)

— 돈육선물시장 및 돈육선물스프레드시장을 제외한 모든 FICC 파생시장의 정규거래시간 개시시점을 기존 9시에서 15분 조기화(8:45~15:45)

— 정규거래 호가접수시간(8:30~15:45)은 현행과 동일하며, 다만, 정규거래의 시가단일가호가시간을 기존 30분에서 15분으로 단축(8:30~08:45)

□ 코스닥150위클리옵션 상장(제5조의4, 별표 6, 별표 6의2, 별표 15)

— 결제주거래를 둘 수 있는 주가지수옵션거래에 코스닥150옵션거래를 추가하고, 그 밖에 상장규칙, 종목코드, 이론가격 등 관련 조문을 정비

□ 신규 섹터지수선물 상장(제75조, 별표 1의3, 별표 6)

— 섹터지수선물거래의 기초자산에 KRX 반도체지수를 추가하고, 그 밖에 거래의 필요적 중단, 거래승수, 종목코드 등 관련 조문을 정비

□ 신규 ETF선물 상장(별표 1의4, 별표 6)

— ETF선물거래의 기초자산에 PLUS K방산 ETF 및 SOL 조선TOP3플러스 ETF를 추가하고, 그 밖에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, 종목코드 등 관련 조문을 정비

□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ETF선물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확대(별표 1의4, 별지 제13호의3)

— ETF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을 보유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ETF선물거래에 대한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를 일괄적으로 5만계약으로 상향하고, 이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미결제약정수량 보유신고서 서식을 정비

라. 시장감시규정 (2025/10/28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'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(2025.7.9, 금융위 보도자료)'에 따라 현행 계좌기반의 시장감시 시스템을 계좌식별번호와 암호화된 고유식별정보를 결합한 개인기반 시장감시 시스템으로 개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회원에게 시장감시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 신설(제11조)

—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회원에게 시장감시에 필요한 계좌식별번호 및 암호화된 고유식별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 신설

마.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5/10/23 개정 · 2025/10/27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지표금리 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업무규정에서 KOFR OIS 거래의 청산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가) 원화 OIS 거래 중앙청산 도입 및 관련 청산 · 결제제도 개선

□ 이자율스왑 관련 용어 정비(제2조, 제3조, 제31조, 별표 2)

— CD금리의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, 업무규정으로 상향하여 규정

— 원화 OIS 거래(KOFR OIS)의 특수성 반영하고, 관련 용어를 모든 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'이자지급일' 용어를 '이자계산기간 종료일'로 변경하고, End-of-Month의 한글 용어를 수정

- 기존 상품(CD IRS, USD IRS)의 경우 이자계산기간 종료일과 이자지급일이 동일하여 구분의 실익이 없었으나, 원화 OIS의 경우 이자계산기간 종료일과 이자지급일이 상이(2영업일 차이)
- '이자금액의 월말일 지급규칙'에서 '이자계산기간 종료일의 월말 조정규칙'으로 변경

— 금융투자협회의 장외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을 준용하여 '이자금액 산출대상기간'을 '이자계산기간'으로 변경

□ 원화 OIS 거래의 세부 요건(적격청산명세) 신설(제3조)

— KOFR 공시 시간(11시)과 원화 OIS의 변동금리 계산 방법(일단위 복리) 규정

— 원화 OIS 거래의 계약만기, 일수계산방식, 영업일 규칙 및 ISDA 정의에 따른 변동금리인덱스 등 구체적인 요건을 정의

□ 금리산출중단에 대응하기 위한 산재되어 있던 변동금리별 비상계획을 통합하여 각 청산대상 상품별로 규정(제3조의 2, 별표 8)

— 변동금리의 대체금리 관련 기존 내용(제3조 제7항 · 제8항)과 KOFR의 대체금리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별표 8에 규정

□ 임의탈퇴한 청산회원에 재가입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다시 정해 공동기금 등 재원 분담 회피 목적의 임의탈퇴를 제한(제4조)

— CCP 개설 초에 유럽 · 미국으로부터 CCP 인가 취득 과정에서 외국계 금융기관이 청산회원 가입 · 탈퇴 · 재가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삭제했던 조항을 복원

□ 청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채무부담등록 및 계약변경의 신청을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(제25조의2, 제68조)

— KOFR OIS의 경우 이자지급일 직전 영업일(이자계산기간 종료일 다음 영업일)에는 채무부담등록 및 계약변경 신청을 거부

• 직전 영업일에 장외에서 당사자 간에 정한 이자교환액을 익영업일에 CCP를 통해 수수하기 곤란

□ 최소 잔존막기가 1영업일 이상의 이자율스왑 청산신청(백로딩)을 허용하기 위해 채무부담등록 가능한 잔존만기를 10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변경(제27조)

□ 원화청산약정거래를 '원화 IRS 청산약정거래'와 '원화 OIS 청산약정 거래'로 구분하고, 원화 OIS 청산약정거래의 금리기준만기 신설(제33조)

[원화 IRS와 원화 OIS 금리기준만기 비교]

	1D	1W	2W	3W	1M	2M	3M	6M	9M	1Y	18M	2Y	3Y	4Y	5Y	6Y	7Y	8Y	9Y	10Y	11Y	12Y	15Y	20Y
원화 IRS	○					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○	○	○
원화 OIS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
□ 원화청산약정거래 관련 조정이자 및 지연이자 산출 시 필요한 금리를 '콜평균금리'에서 'KOFR'로 변경(제38조, 제101조)

□ 일일정산차금의 신규 구성항목인 미실현이자차금을 계산하기 위해 미실현이자의 산출 방법을 규정(제39조의2)

— 두 번째 영업일이 이자지급일인 원화 OIS 거래의 수수 예정인 이자차액

□ 차감결제현금을 상품별로 구분 · 산출하기 위해 산출 기준을 '결제통화'에서 '결제통화 및 변동금리'로 변경(제40조)

— 원화 IRS 청산약정거래(CD IRS), 원화 OIS 청산약정거래(KOFR OIS) 및 달러청산약정거래(USD IRS)

□ 청산회원 간 또는 청산계좌 간 청산약정거래의 이관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(제70조, 제73조)

— 이관신청일이 이자지급일 직전 영업일인 원화 OIS 거래가 포함된 경우 이자차액 수수 관련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포지션 이관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

□ 휴업일이 변경된 경우 이자지급일 및 계약만기일 뿐만 아니라 이자 계산기간 종료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(제102조)

□ 원화 OIS 신규 청산에 따라 각종 산출기준을 '원화청산약정거래'에서 '원화 IRS 청산약정거래'와 '원화 OIS 청산약정거래'로 변경(별표 1, 별표 1의2, 별표 2, 별표 4)

— 위험노출액과 총증거금초과위험상당액, 정산금리와 순현재가치, 유동성위험증거금률과 총가치변동증거금률 등의 산출 시 적용

□ 정산금리 산출을 위해 필요한 원화 OIS 청산약정거래의 금리기준 만기 및 금리 수집방법 등을 마련(별표 1의2)

□ 원화 OIS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도금리, 할인계수 및 순현재가치 산출방법을 마련(별표 2)

— 변동금리 이자금액 계산 시 참조하는 금리가 익일물 KOFR이므로 일별 선도금리를 복리로 계산하여 기간화 선도금리를 산출

— 이자지급 유예에 따른 미실현이자에 대한 조정이자를 수수하지 않도록 순현재가치에서 미실현이자를 차감하여 조정된 순현재가치를 산출

나) 원화 OIS 거래 청산 개시에 따른 리스크관리 제도 개선

□ 순위험청산증거금을 상품별로 구분 · 산출하기 위해 산출 기준을 '결제통화'에서 '결제통화 및 변동금리'로 변경(제50조)

— 원화 IRS 청산약정거래(CD IRS), 원화 OIS 청산약정거래(KOFR OIS) 및 달러청산약정거래(USD IRS)

□ 청산위험증거금, 채무부담등록증거금 및 일중청산증거금의 경우 상품별로 구분 · 산출한 후 결제통화별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(제51조, 제53조, 제54조)

— 원화 OIS 청산약정거래의 일중청산증거금 산출 시 전일에 확정한 KOFR를 사용하기 위해 관련 내용 정비(제54조)

• CD금리 및 KOFR 외 정산금리의 경우 당일 11:30분 금리를 사용

□ 업무규정에서 경매 참여대상을 전체 청산회원으로 확대 함에 따라 경매정보 통보대상 및 금리정보 제출대상 청산회원 관련 조문 정비(제81조의2, 제88조)

□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 관련 원화 OIS 거래에 대한 위험노출액, 증거금초과위험상당액 등의 산출방법 마련(별표 1)

다) 공동기금 및 대용증권 관련 개정

□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공동기금 현금납부 의무비율 도입(제14조제5항)

— 청산회원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최소비율을 회원별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의 15%로 설정

□ 시행세칙 제65조 제3항 內 한국은행의 「공개시장운영규정」 제4조에 따른 증권매매 대상 증권 중에서 금융채를 제외하여 대용증권으로 불인정(제65조 제3항)

바.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(2025/10/23 제정 · 2025/10/24 시행)

1) 제정 이유

□ 한국거래소 「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총칙(제1조~제2조)

— 목적, 용어의 정의 등

□ 상장제도(제3조~제15조)

— (상장심사) 상장심사 절차, 상장심사 방법, 의무보유 수량, 상장 신청 서류 등

— (상장관리) 관리종목지정 및 해제시기, 매매거래정지 기간 등

□ 공시제도(제16조~제18조)

— 공시대리인의 자격,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연도 결산보고서 등, 상장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 등

□ 매매 및 청산결제제도(제19조~제26조)

— 기준가격, 가격제한폭(±30%), 호가수량단위, 매매수량단위,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, 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의 가격결정 방법, 투자자유의사항고지대상 등

□ 보칙(제27조)

—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과 관련한 수수료율, 산출 · 납부 방법 등

사. 증권 ·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(2025/10/22 개정 · 2025/10/24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신종증권시장 개설에 따라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의 증거금 산출 등 결제위험 관리를 위한 증거금률을 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의 증거금률을 50%로 정함(별표 3 제1호)

— 증권시장 거래증거금률 산정

증권유형	구분	거래증거금률
증권시장 상장 주권	해당 종목이 속하는 업종지수가 있는 종목	해당 종목이 속한 업종지수의 기본거래증거금률과 최저증거금률 중 큰 값
	해당 종목이 속하는 업종지수가 없는 종목	해당 종목이 속한 시장 시황지수의 기본거래증거금률과 최저증거금률 중 큰 값의 1.2배
외국주식예탁증권	-	
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	상장 후 6개월 경과 종목	해당 종목의 기본거래증거금률과 최저증거금률 중 큰 값
	상장 후 6개월 미경과 종목	해당 종목 중 거래대금(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대금을 포함한다) 상위 30% 종목의 기본거래증거금률 평균값
부동산투자회사주권 선박투자회사주권 투자회사주권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주권 상장수익증권	-	
주식워런트증권	기초자산이 코스피200인 종목	50%
	기초자산이 코스피200이 아닌 종목	60%
신주인수권증권	-	60%
신주인수권증서	-	30%
비금전신탁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	-	**50%**

아. 금리 · 통화 · 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(2025/10/23 개정 · 2025/10/27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금리 · 통화 · 일반파생상품의 개장시각 조기화(10.27. 시행)에 따른 시장조성 의무발생시간을 명확히 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시장조성 의무발생시간 기준 조정(별표 4)

— 개장시각 조기화 이후에도 시장조성 의무발생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의무발생시간을 명시

- 9시 5분부터 15시 35분까지의 접속거래시간으로 하고, 파생상품시장 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거래시간에 연계하여 의무발생시간을 조정

자. 주식 ·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(2025/10/23 개정 · 2025/10/27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코스닥150옵션 거래에 위클리옵션이 도입됨에 따라 위클리옵션에 대한 시장조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코스닥150위클리옵션도 시장조성 의무종목으로 추가하고, 시장조성실적 평가기준을 마련(제5조 및 별표4)

— 개별 시장조성자에게 지급되는 시장조성대가는 상품군별로 연간 1억원을 한도로 하고 해당 상품군은 다음과 같음

- KRX300선물
- **코스닥150옵션 결제월거래**
- **코스닥150옵션 월요일 결제주거래**
- **코스닥150옵션 목요일 결제주거래**
- 섹터지수선물·변동성지수선물
- 주식선물·ETF선물
- 주식옵션
- 코스닥글로벌선물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